


CSE 사례 번호:

양육비를 받도록 명령받은 사람: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은 부모:

법원 사건 번호:

친애하는 :

저희 사무실은 귀하의 여권 거부에 관한 문의를 접수했습니다. 정기 해제 자격을 얻으려면 매월 말 기준 주 전체 지원금 체납 잔액이 0 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래에 설명된 정상 참작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삶과 죽음의 상황:** 이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직계 가족은 부모 또는 보호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고모, 삼촌, 의붓자녀, 계부모, 의붓형제 또는 배우자로 정의됩니다.

여권 거부 프로그램(PDP)에서 제외를 요청하려면 지역 양육비 기관(LCSA)에 연락하여 가족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 증명에는 사망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서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 신청 거부 통지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여권 기관의 위치(대사관/영사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원 오인:** 이는 개인이 양육비 의무 연체를 이유로 여권 신청이 거부된 경우, 해당 개인이 PDP에 제출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인은 여권 신청 거부서 사본,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SN), 주간 전화번호를 LCSA에 제공해야 합니다. LCSA는 내부 절차를 따라 해당 사건이 신원 오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개인을 잘못 제출한 경우:** 이는 동일한 SSN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 양육비 의무 체납으로 PDP에 제출되어 여권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인은 여권 신청 거부 통지서 사본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여권 발급 기관의 위치 (대사관/영사관)를 LCSA에 제공해야 합니다.

나열된 정상 참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저희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해당 정보를 아동양육지원서비스국(DCSS)에 전달하여 여권 발급을 검토하겠습니다. DCSS에서 결정에 대해 전화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Customer Connect을 방문하셔서 [www.childsupport.ca.gov/customer-connect](http://www.childsupport.ca.gov/customer-connect)에서 온라인으로 도움을 받으시거나 (866) 901-3212로 전화하세요.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분은, TTY 번호 (866) 399-4096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